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제3호까지 및 제7호”를 “제3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교육부장관”을 “제2호,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사항에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2항,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·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학교생활기록의 관리·보존 등) ① (생략)	제22조(학교생활기록의 관리·보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제3호까지 -----.
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. 다만, <u>교육부장관</u>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제2호,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사항에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98